

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3 월 12 일

여 수 시 장

2024.3.12



여수시 조례 제2061호

붙임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도로점용료 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

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여수시 도로점용료 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본문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) ②제5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 하지 않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6조(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)</u> 점용료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과 및 징 수한다.</p>	<p><u>제6조(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)</u> ①----- ----- ② <u>제5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</u> <u>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</u> <u>하지 않는다.</u></p>